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6. 9 선고 2019가단2251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재명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변 론 종 결 2020. 5. 15.

판 결 선 고 2020. 6. 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2020.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4. C에게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2. 28.부터 2013. 2. 28.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원고와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7. 2. 28.까지로 연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도 2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나. 이후 C의 요청으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6. 3. 31.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2016. 2. 17. 임대차보증금의 일부인 2,000만 원을 우선 반환해 주었다.

다. C은 2016. 3. 2. 피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8,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에게 질권(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에게 질권설정증낙서를 교부하였다.

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6. 3. 21. C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이 2016. 3. 2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3. 31. 이 사건 질권에 따라 피고에게 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질권을 실행하면서 대출원금인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바. F은 2018. 3. 23.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다음

2019. 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203933호로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민법 제450조에서 정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원고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 등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F에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2019. 9. 30. F에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가. 지명채권에 관한 채권질권은 질권설정의 합의 이외에 민법 제349조, 제450조가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만 제3채무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하여 제3자에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하는 피고가 2016. 3. 31. F에 앞서 1억 2,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C에 대한 채권을 변제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2. C이 대출을 받으면서 함께 작성한 질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질권설정증낙서를 받았으므로, 질권설정계약서와 질권설정증낙서는 같은 날 같은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연속성 있는 문서로서 민법 제349조, 제450조가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두 서류는 작성 주체나 작성 목적이 판이하고 그 문언을 고려할 때 연속된 문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16. 3. 31. C에게 6,0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질권에 따라 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8,000만 원을 모두 받아 초과 지급받았으므로 위 6,000만 원도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이어야 하는데, 질권자가 초과 지급 부분을 질권설정자에게 그대로 반환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질권설정자가 실질적 이익을 받은 것이지 질권자로서는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0. 2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가 위 돈을 지급받은 2016. 3. 3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위 돈을 받을 당시 악의의 수익자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경은